

#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262
------	------

2024. 12. 20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】

-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4.12.19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홍보기획관 마채숙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」에서 준용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으로 시민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동 조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조항 현행화(안 제13조제2항)
- 나. 위원회 조항 재정비(안 제19조 및 제22조)
- 다.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### (1) 시민 우수제안 제도

- 서울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‘상상대로 서울’(idea.seoul.go.kr)을 운영하고 있으며, 동 조례에 따라 우수 의견을 제안한 시민에게 소정의 포상을 제공하고 있음.

#### < 우수제안 선정 현황(24.11.30. 기준) >

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시민제안 접수건수	2,504건	2,359건	1,604건	1,379건	1,788건
우수제안	16건	11건	20건	20건	20건
시상금액	38만원	48만원	79만원	155만원	320만원

※ '24년도 포상: 최우수 1명(30만원), 우수 10명(20만원), 장려 9명(10만원) / 모바일 상품권 지급

### (2)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」를 준용하지 않고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임.

**< 신·구조문대비표 >**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) ① (생략)  ② 우수제안 및 우수제안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 중 제안 및 수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한다.	제13조(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- 2024년 5월,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가 「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」로 전부개정되면서 일반 시민은 창의행정상(종전의 서울창의상)의 제안 당사자에서 제외되었음.

**< 창의행정상(서울창의상) 제안자 범위 >**

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(2023.12.)	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(2024.5.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시민 및 서울시·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</u> 하고 공무원의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,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·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</u> 하고 업무혁신 사례 발굴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이에 서울시는 시민 제안에 대한 내용이 빠진 「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」를 시민 우수제안 제도 운영에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한 것임.
- 동 조례가 개정 전의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에서 준용하였던 부분은 심사기준 및 시상등급에 관한 사항이며, 부상의

규모에 관하여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<sup>1)</sup> 기존 준용의 의의는 크지 않았다고 판단됨.

- 이에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은 무리가 없다고 보임.

**<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(2023.12.) 준용 내용 >**

제10조(심사기준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추천 및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창의성
2. 실현가능성
3. 효율성 및 효과성
4. 적용범위
5. 계속성

제12조(시상등급) 서울창의상의 등급은 최우수, 우수, 장려로 구분하여 제3조제1항의 각 부문 별로 시상한다.

- 다만,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서 창의행정상 수여 대상자 중 시민을 삭제한 이유는 홍보기획관의 시민 우수제안 선정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<sup>2)</sup>인데,

기존 서울창의상의 부상 규모(100만원~300만원)에 비해 시민 우수제안의 부상 규모(10만원~30만원)가 매우 작아 서울창의상 시민부분의 폐지가 시민의 시정 참여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겠음.

1) 준용 규정은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자치법규 적용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음. (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, 417p) 관련하여 부상에 대해서만 자의적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.

2)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(2024.3.), 기획경제위원회

- 따라서, 홍보기획관은 시민 우수제안 제도의 부상 규모를 대폭 확대<sup>3)</sup>하는 등 동기부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.
- 한편,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의 홍보기획관이 시정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실행방안까지 모색해야 하는 시민참여 및 시민 제안 업무를 소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--

3) 2025년 포상금 예산안: 500만원 (전년도 340만원 대비 160만원 증액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10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」에서 준용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으로 시민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동 조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조항 현행화(안 제13조제2항)
- 나. 위원회 조항 재정비(안 제19조 및 제22조)
- 다.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 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 8. 8. ~ 8. 28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최재혁(☎ 2133-6532)

##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시민””을 ““시민””으로, ““시””를 ““시”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시민제안””을 ““시민제안””으로, “이하“시장””을 “이하 “시장”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, 제4항 및 제5항을

각각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(4급 상당)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시민</u>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<u>시</u>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“<u>시민제안</u>”이란 시민이 서울특별시(이하“<u>시장</u>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·행정서비스·행정문화·행정운영의 개선 등 시의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<u>민원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 민원</p> <p>다. ~ 마. (생략)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13조(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우수제안 및 우수제안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울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p>1. “<u>시민</u>”----- ----- ---“<u>시</u>”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시민제안</u>”----- -----<u>이하 “시장”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 민원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</u></p>

창의상 운영 조례」 중 제안 및 수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한다.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민 참여 업무담당 부서장(4급 상당)으로 한다.

<신설>

제2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설>

③·④ (생략)

한다.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 
-- 위원장 1명-----  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(위원회의 운영) <삭제>

<삭제>

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민 참여 업무담당 부서장(4급 상당)으로 한다.

①·②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
⑤ (생략)

같음)

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의 규정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불필요

## 4. 작성자

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최재혁(☎ 2133-6532)